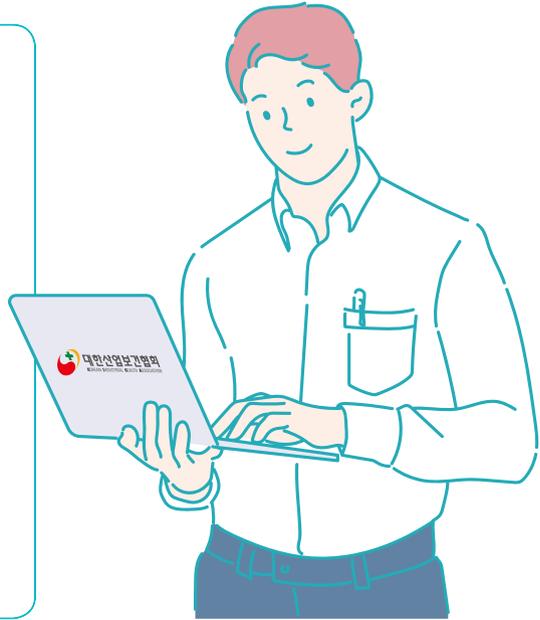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 12월 들어가며
- 1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
- 2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1. 정의,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 의무)
- 3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3. 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 의무, 4. 경영책임자의 처벌, 5. 법인 등의 처벌)
- 4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6. 인과관계의 추정, 7. 손해배상의 책임, 8. 벌칙의 하한형 설정)
- 5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1. 경영책임자 개념의 불명확 및 불합리)
- 6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 7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3. 평등의 원칙 또는 죄형균형의 원칙 위반)
- 8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4. 불명확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인한 혼란)
- 9월 맺으며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6. 인과관계의 추정

박주민 의원안에서 제5조 제1호는 위험방지 의무 위반으로 추정되는 것이 당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실이 아니라 과거 5년간 수사기관 또는 행정청에 의해 법위반이 3회 이상 확인된 것을 표지로 하고 있는바, 이는 ‘성격책임’ 또는 ‘행위자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행위형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즉, 행위자가 행한 개별행위 및 그 결과를 근거로 책임의 인정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개념의 핵심(개별행위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었다.

제5조 제2호는 당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증거인멸·현장훼손 등의 정황을 발생원인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애초에 인과관계 추정과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과 무관한(즉, 인과관계와 무관한) 특정 사실·정황을 가지고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처벌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컸다.

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위헌소지가 큰 점이 고려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 끝에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7. 손해배상의 책임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보편적 피해구제제도라기보다는 보통법(Common-Law)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특수한 제도로서 드물게 활용되는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고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정된 분야에서 예외적으로만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형사적 제재가 필요함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능을 담당하거나, 민법의 불법행위제도가 불완전하게 집행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설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악질적인 침해를 의도하였든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타인의 권리 혹은 이익을 무시하였든지, 고의적이나 악의적인 침해를 의도하였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의식적으로 현저하게 무시한 위법행위 등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사건에서 안전보건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있어도 생명과 건강 침해 자체를 의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산업재해 영역(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은 없다. 호주의 New South Wales 주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징벌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한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¹⁾

보통법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산안법은 성문법으로 존재하는바, 산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안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에서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에 추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피고가 이미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경우 징벌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호주에서도 징벌배상의 목적인 처벌과 억지가 형사소송으로 인해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은 행위에 대해 징벌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보편적 피해구제 제도라기보다는 보통법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특수한 제도로서 드물게 활용되는 것이다.



1) 박희주,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4, 106면.

배상이 인정된다면, 피고를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없고 피고의 행위가 이후에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면 징벌배상청구를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지된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피고가 이미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았는지를 고려한다.²⁾

보통법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근거는 ① 형사처벌이 마땅하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한 결과 실체법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 ② 실체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절차법적으로 기소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검사가 기소에 소극적인 경우 ③ 실체법·절차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처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형사법적 처벌내용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벌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즉,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이중 제재를 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박주민 의원안은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규정하고 있었던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영하고 있는 개별국가(영국, 뉴질랜드 등)와 EU 의회(2013년)에서는 과도한 배상을 초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모두 입증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는바, 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 끝에 손해액의 최저 5배에서 최대 5배로 조정되었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8. 벌칙의 하한형 설정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설정하고 있었다. 징역형의 하한형은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범이나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이중 제재를 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박희주, 앞의 책, 100, 105
~106, 109~110면.



적용하는 형벌부과 방식이다. 안전보건기준 위반과 같이 위반유형(위반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등)이 매우 다양한 범죄에 대해 (미필적)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발생에 대한 고의성은 없는 범죄에 대한 형벌부과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벌금의 하한 규정은 매우 드물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2019. 12. 24)에서 발견된다. 벌금의 하한선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위반유형이 정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이 가능하지만, 위반유형이 매우 다양한 안전보건기준 위반(안전보건기준과 그 위반에는 경미한 사항도 많다)에 대한 하한선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

한편, 본조는 추상적 위험범(안전보건기준 위반)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침해 범의 결과적 가중범(예: 상해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불법의 성질이 다름에도, 징역형의 경우 형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하는 것은 과잉처벌로써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벌규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안전보건기준 위반범죄에 대해 하한형을 설정한 입법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당초 모델이었던 영국의 법인과실치사 법도 하한형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벌칙의 하한형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 끝에 벌금형에서는 삭제하되, 징역형과 벌금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역형에 대해서만 하한형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추상적 위험범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침해 범의 결과적 가중범과 불법의 성질이 다름에도, 징역형의 경우 형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하는 것은 과잉처벌로써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벌규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음호에 계속〉